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중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1장(투자)과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1)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1)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 2) 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 3) 적용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4)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 그리고 5)
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제11.8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2)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3)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7308호, 2004년12월31일)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4)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11.3조(내국민 대우) 및 제12.2조(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5)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주세법(법률 제7841호, 2005년12월31일)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11.8조(이행 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6)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능력을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7)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12.4조(시장 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수잔 C. 슈와브